

大學入學論述考查 實施指針

文教部 大學局

I. 現 況

- '85學年度 大學入試制度補完 發表：'84.3.31
- 內 容：大學別 論述考查實施 권장
- 實施時期：1986학년도부터
- 適用範圍：10%범위 이내 成績 반영

II. 指 針

1. 目 的

- 大學入學學力考查에서 四肢選擇型 문항만 출제 함으로써 파생되고 있는 短點 보완
- 大學入試에 있어서 대학의 自律性 신장

2. 概念定義

論述考查란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應試者들의 高次的인 思考態力(表現力, 組織力, 綜合力, 推理力, 創意力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特定敎科 目的 內容에 拘애받지 않는 素材(脫敎科的, 汎敎科的) 중에서 主題를 선정하여 論文型 형태로 出題, 採點되는 考查를 말함

3. 出 題

- (1) 出題委員은 特定敎科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학문분야에서 適正人員(최소 3명 이상)을 選任함
- (2) 출제하는 主題의 성격은 特殊分野의 知識,

- 經驗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주변에서 상 식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素材 선정
- (3) 다양한 論理的 陳述이 최대한 허용되도록 함
 - (4) 問項形式選定은 大學의 自律決定에 一任함
 - (5) 大系列別 또는 中系列別 出題(小系列 및 學科別 出題 지양)
 - (6) 問項數는 1~2개 정도가 바람직하나 考查時間 등을 감안 大學 自律로 결정
 - (7) 여러 개의 問項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 하여 답하는 방법은 지양
 - (8) 答案의 分量은 主題性格, 論述形式, 所要時間, 問項數 등을 충분히 고려 적절히 결정
 - (9) 問項末尾에 時間, 分量, 點數, 採點基準 제시

4. 採 點

- (1) 採點委員 全員이 各自 模範答案을 작성 充分한 토의를 거친 다음 採點基準 설정
- (2) 採點方法은 採點單位에 따라 分析的, 概觀的, 折衷的 方法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主題의 特性, 採點委員 構成, 採點時間 등의 조건을 고려 適正한 方法 선택
- (3) 採點委員은 採點方法과 節次에 대하여 협의 하고 합의하는 充分한 기회를 갖도록 함
- (4) 採點은 信賴度와 客觀度를 높이기 위하여 각 採點要素別로 評定尺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채점토록 함

- (5) 採點은 公正性과 客觀性이 최대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採點基準을 근거로 하여 答案 1枚當 適正數(최소 3명 이상)의 採點委員이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채점함
- (6) 採點은 點數의 幅(辨別力)이 넓혀질 수 있도록 유의함

5. 其他事項

- (1) 각 大學은 論述考查施行을 위한 常設機構 또는 委員會 설치 운영
- (2) 高等學校 進學指導에 대비, 각 大學은 論述考查의 실시에 관한 方針을 조속히 확정·공고

學生自治機構 運營指針

I. 目的

學生自治機構(이하 ‘自治機構’라 한다)의 組織과 運營에 필요한 事項을 정하여 學生自治活動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學風을 조성하기 위함

II. 基本方針

- 1. 自治機構의 組織과 運營에 필요한 事項은 學則과 自治機構 會則으로 정한다.
- 2. 自治機構 會則은 學校의 行政規則으로 정하되 本指針에 明示한 사항과 學則에 委任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自治機構는 自治活動의 성격을 넘는 政治 및 社會活動을 할 수 없으며, 기타 學生自治活動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4. 學徒護國團 繼續 運營 또는 學生自治機構設置 運營은 '85학년도까지 大學에 일임한다.

III. 細部事項

1. 學則에 規定하여야 할 사항

- (1) 名稱: 각 大學에 일임

- (2) 學生代表 選任方法: 각 大學에 일임
- (3) 部署, 機構構成: 學則에 일임
- (4) 任務, 機能: 自治活動의 구체적 범위 등 學則에 일임
- (5) 禁止活動: 學則에 명시
- (6) 學生代表 任期: 學則에 일임
- (7) 監督機構 構成: 내용은 學則에 일임
- (8) 運營方式: 學則에 일임
- (9) 效力 停止: 自治機構는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됨

2. 學生自治機構 會則에 포함될 사항

- (1) 組織原則: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代表機構로서 組織
- (2) 組織의 性格: 自治機構 성격을 넘는 政治活動 및 學校運營의 不當한 간섭은 배제함
- (3) 學生代表 被選資格: ‘資格基準’ 別表 참조
- (4) 選舉運動의 制限: 自治機構 성격 범위 내에서 選舉運動단 허용(金錢撒布, 暴力 排除)
- (5) 會費: 學校當局의 감독하에 徵收, 執行
- (6) 監督 責任: 學教當局의 지도 감독
- (7) 效力 停止: 自治機構 會則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됨

IV. 細部 推進計劃

1. 自治機構를 설치하는 各級 學校는 학교 실정에 따라 學則과 學徒護國團 規則을 改正하고 學生自治機構 會則을 制定·보고하여야 한다.

2. 會費徵收 및 會計管理

'84학년도 學徒護國團費 決算殘額은 學生自治機構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學生自治機構 歲入豫算에 編入하여야 한다.

3. 報告事項

自治機構를 설치하는 各級 學校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學則改正 사항
- (2) 自治機構 會則制定 사항
- (3) 自治機構 代表者 명단

〈別表〉

各級 會長 資格基準

- 가. 品行이 方正하고 指揮統率能力이 있는 者
- 나. 원칙적으로 成績平均이 'B' 學點 이상인 者
- 다. 懲戒 또는 留級을 받은 사실이 없는 者
- 라. 出席 상황이 양호한 者
- 마. 立候補 당시 4학년생이 아닌 者. 다만 學校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文敎部와 협의하여 조치